

통역·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(재일 2024-1)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외국인과 청각장애인·언어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통역센터에서 통역·번역인 및 수어통역인 후보자를 두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통역·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를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능력, 자격 등을 갖춘 자를 비상근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(안 제13조제2항 신설)
-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통역·번역뿐만 아니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제공하는 통역·번역에 대하여도 그 통역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함(안 제13조제4항)
- 수어가 필요한 대상을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함(안 제16조제1항)

3. 통역·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통역·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(재일 2024-1) 일부개정예규

통역·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(재일 2024-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통역인을 둔다” 를 “통역·번역인, 수어통역인·농통역인 후보자(이하 “법정통역센터 통역인” 이라 한다)를 둔다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법정통역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통역·번역인, 수어통역인 후보자(이하 ‘법정통역센터 통역인’ 이라 한다)를” 을 “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” 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위탁용역계약” 을 “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” 으로 한다.

-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, 경험 및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” 을 “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역센터의 통역·번역인 후보자로부터” 를 “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부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 (법정통역센터의 조직) ① 법정통역센터에는 법정통역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 이라 한다)과 <u>통역인을 둔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3조 (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)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정통역센터에 <u>상시 근무하는 통역·번역인, 수어통역인 후보자(이하 ‘법정통역센터 통역인’ 이라 한다)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용역(이하 ‘위탁용역계약’ 이라 한다)으로 전환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제1항의 <u>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통역·번역에 대하여는 제24조,</u></p>	<p>제10조 (법정통역센터의 조직) ① -- ----- ----- <u>통역·번역인, 수어통역인·농통역인 후보자(이하 “법정통역센터 통역인” 이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 (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) ① ----- <u>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법원행정처장은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, 경험 및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 <u>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</u>-----</p>

제25조,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일당, 통역료,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일당, 통역료, 번역료에 대하여는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 (통역·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) ① 각급법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, 사건의 유형,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·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·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·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[전산양식 B 2610]를 제출받아,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(참조 사법지원실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정통역센터장은 통역센터의 통역·번역인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[전산양식 B2610-1]를 제출받아,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(참조 사법지원실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.

제16조 (통역·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) ① -----

-----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-----

-----.

② -----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부터 -----

-----.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7649